

「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영길, 김정도, 김재우, 박세채,
이명희, 이정희, 추은희, 허민근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개정
- 책무(안 제3조)
- 향토유산위원회(안 제4조~제11조)
-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(안 제12조~제15조)
- 지정향토유산의 관리 및 보호(안 제16조~제20조)
- 향토유산 교육 등 지원(안 제2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, 제13조
 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5조, 제26조
 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1조, 제12조
 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가유산 체계의 개편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 고유 자산의 보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향토자연유산의 지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 있으므로, 유형별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향토유산위원회는 지역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역사, 문화 관련 자격 및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뿐 아니라 ‘지역 문화’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파악·관리하여 위촉 대상자 풀(pool)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